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S등급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대상인원 및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39조제4항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